

수원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79677(본소), 2020나79684,
2020나4970(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 부당이득금
등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79677(본소), 2020나79684,
2020나4970(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23 선고 2018가단101572, 2018가단1109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은

피고1. C

2. D

피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E

피고(반소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G

변론 종결2021. 6. 2.

판결 선고2021. 7. 7.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23. 선고 2018가단101572,

2018가단110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8가단1093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G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G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G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I. 청구취지

[본소]

1. 피고 C, D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E(이하 '참가인 E'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게 138,892원, 원고(반소피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88,7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G(이하 '참가인 G'이라 한다)은 원고 A에게 8,340,566원, 원고 B에게 5,359,7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독립당사자 참가]

1. 참가인 E: 피고 D은 참가인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참가인 G: 피고 C은 참가인 G에게 별지3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참가인 G의 반소]

참가인 G에게, 원고 A는 11,317,240원, 원고 B은 6,52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참가인 G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II.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참가인 G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참가인 G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항(제4쪽 제15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의 라. 2), 가)항 말미(제8쪽)의 <경정 후 배당액의 계산>표 첫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참가인 G	45,314,394	68,098,482	22,784,088원(N 배당액 11,267,791원을 B, A, G에게 채권액별로 안분 배당한 결과 G의 몫 5,360,962원 + D 배당액 36,620,322원을 B, A, 원고 G에게 채권액별로 안분 배당한 결과 G의 몫 17,423,126원) 증액
----------	------------	------------	---

』

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항 마지막(제14쪽 제15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들의 참가인 G의 반소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제기한 참가인 G의 반소청구에 부동의하므로 참가인 G의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735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 G의 반소청구는 참가인 G에게 실제적 배당수령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관련 배당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것인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본소 및 참가인 G의 독립당사자참가청구의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항의 제목(제14쪽 제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본소 및 참가인 G의 반소에 관한 판단』

마.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의 가. 4)항 마지막(제17쪽 제4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따라서 원고들은 참가인 G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 지급청구권 중 원고들과 참가인 G의 채권액에 따라 별지4 '부당이득반환금 산출근거'와 같이 계산한 부당이득금(원고 A: 11,317,240원, 원고 B: 6,520,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의 나. 2), 다), (1), (가)항 제21쪽 제4행의 '생긴 이미 생긴'을 '이미

생긴'으로, (나)항 제22쪽 제4행의 '압류 대상인'을 '압류 대상인'으로 각 고치고, 같은 항 두 번째 문단 이하(제22쪽 제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Q의 채권압류 액수인 209,263,550원만으로 J재건축조합의 I에 대한 채권 합계를 초과함이 현저하므로, 1) Q의 2011타채100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I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가 경합되고, 압류의 경합으로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어 J재건축조합의 I에 대한 채권의 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1.(참가인 G의 2010타채1215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2011타채13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한편 참가인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재건축조합의 I에 대한 분담금에 대하여 2003. 4. 16.부터 2011. 4.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9,713,438원으로, 2014타채450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압류대상 채권액(J재건축조합의 I에 대한 분담금의 지연손해금 중 4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압류대상 채권에 2011. 4. 20.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게 되므로, 결국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 중 2011. 4. 20.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게 된다. 그런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내려진 전부명령은 그 자체가 무효이며 여기에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06. 11.28. 선고 2006나2676 판결 등 참조), 참가인 G의 전부명령은 전부(全部) 무효로 된다. 따라서 참가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의 나. 2), 다), (3)항의 마지막 문장(제24쪽 제3항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즉 참가인 G은 채권의 압류권자에 불과한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채권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참가인 G이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곧바로 배당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G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8쪽 제20행의 'E'를 'E는'으로, 제29쪽 제5행의 '주장의'를

'주장은'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및 참가인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참가인 E의 독립당사자참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참가인 G의 독립당사자참가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본소 및 각 독립당사자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 G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참가인 G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기창

판사이지형

판사최호열

별지

1) J재건축조합의 I에 대한 채권액은 약 58,000,000원에서 177,000,000원 사이로, 가장 큰 금액도 Q의 채권압류액에 미치지 못한다.